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18,000,000	45,540,000
일반회계	1,380,800,000	41,424,000
특별회계	137,200,000	4,116,000
공기업특별회계	48,100,000	1,443,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300,000	939,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800,000	504,000
기타특별회계	89,100,000	2,673,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647,000	199,4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22,000	96,6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85,000	11,550
주택사업특별회계	362,000	10,860
치수사업특별회계	16,839,000	505,170
주차장특별회계	7,333,000	219,990
대지보상특별회계	298,000	8,94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495,000	1,604,8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000	9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33,000	12,9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000	1,62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674,469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7,182,316천원,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 19,492,153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